

도시가스사용신청(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회사보관용

홈페이지 www.jeucitygas.com

우) 6307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미리내길 153 | ☎ 1600-3437

가스 사용 주소 Address				처리담당자	
사용 용도	<input type="checkbox"/> 주택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연료전지용 <input type="checkbox"/> 업무난방용 <input type="checkbox"/> 냉난방공조용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명의변경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객 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 표시부분은 고객님께서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 부분은 고객님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상호(법인명)* Company Name	법인등록번호 *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휴대폰 *	사업자등록번호 *	Business License Number
	요금 청구 방법 *	<input type="checkbox"/> 알림톡(문자)고지 <input type="checkbox"/> 고지서(지로)	<input type="checkbox"/> 모바일(가스앱) <input type="checkbox"/>

* 청구서는 알림톡(문자) 고지로 기본 청구되며, 종이고지서 지로 요청시 고지서란에 체크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가스앱) 선택시 가스앱 설치 후 반드시 고객납부번호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팩스, 카카오톡으로 청구서 고지로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 1600-3437)로 연락하여 변경요청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서류(주택용인 경우)를 발급마감일인 익월 05일까지 (주)제주도시가스로 등록/제출하셔야 하며, 미등록/지연제출로 인한 미발행 부분에 대하여는 발행 및 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당사(☎ 1600-3437)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휴대폰 *	관 계 *	

* 직계 존비속 또는 직원(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외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동납부신청 * 익월 고지서 상 자동이체 적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미적용 된 경우 반드시 당사로 연락하시어 재접수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은행명 BANK	계좌번호 Account Number	예금주명 Account Holder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Date of Birth / Business License Number
CMS코드번호	9951558617	예금주 연락처 Mobile No	

* 본인은 자동납부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등)를 삼기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명의인 앞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납부를 신청합니다.

* 고객명(신청인)과 자동납부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삼기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동이체 출금일은 당사 지정일에 출금되오며(말일), 미출금세대에 대해서는 예고없이 출금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록계좌가 3개월 이상 동일한 시유(잔액부족, 입류/가입류 계좌, 법적제한계좌, 입금한도초과, 해약계좌, 사고신고계좌 등)로 자동이체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고객 동의 없이 자동이체가 직권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예금주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미동의 예금주(본인) : (서명/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용고객정보 : 고객명(상호),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도시가스 사용계약(사용고객등록, 변경, 해지등)관리, 요금고지(모바일, 알림톡(문자)고지) ※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견침, 고지/ 이용요금의 수납, 환불/ 미납요금에 따른 채권추심 및 법적조치 ※ 안전점검관리(SMS사전안내, 흥보등), 계량기교체, 부가서비스 제공 등 기타 도시가스 사용과 공급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의 목적	※ 사용계약일~해지일 ※ 요금정산, 오납등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해지 후 5년간
※ 자동이체신청시 : 예금주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 사용량, 사용금액, 결제기록, 공급증지기록		

▶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이용 및 보유기간
신용정보(채권추심)회사 소송업무 대리인	고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계좌번호, 예금주, 연체정보	신용정보조회, 미납요금회수, 채권추심업무, 채무불이행 등록 및 해제, 소송업무	이용목적 기간 내
도시가스 업무관련 협력업체 (계량기, 가스기기 등)	고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기기정보	도시가스 공급 관련 및 안전점검, AS 등	이용목적 기간 내
유관 공공기관	고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계좌번호, 예금주, 요금연체정보, 사용량, 경감 정보, 결제기록, 공급기록, 기기정보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목적 기간 내
임대(대리)인, 관리업체		임대차 등 관련 업무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위와 같이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고객은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 마케팅 수신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선택"]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이용 및 보유기간
고객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고객 편의서비스 제공 상품서비스 안내 및 광고, 홍보, 프로모션 제공	동의철회 시까지

* 미동의 시 제주도시가스의 혜택정보, 프로모션 및 이벤트 정보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필수"]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였고, 뒷면의 <도시가스사용 안내문>에 대해서도 숙지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도시가스 이용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준수하며 위의 내용과 같이 사용(계약)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 도시가스사용 안내문

- 1 당사는 도시가스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 하겠습니다.
- 2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은 당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전입·전출 및 민원 접수 요청 시 사전예약제로 2~3일 전 당사로 사전예약 접수해 주셔야 원하시는 날짜에 방문이 가능하며, 출장비 및 제반비용(시공비, 차량비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토요일은 당직제 근무로 민원업무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일요일·공휴일·대체휴일은 휴무입니다.(추후 법을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가스使用者는 가스요금, 가스계량기 검정·교체비용 및 그 밖의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당사는 주택용, 영업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 합니다.
- 7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使用者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 사용자는 문서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는 가스使用者 명의변경 통보가 있는 경우 이전 가스使用者의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8 이사 또는 고객정보(사용자명, 연락처 등) 변경 시, 당사로 연락하시어 고객정보를 변경하셔야 하며 고객정보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9 당사는 공급규정 제27조에 의거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①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 ② 가스使用者와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 ③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 ④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 ⑤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 ⑥ 사업장의 수시변경 혹은 폐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가스 사용 여부가 불투명한 가스사용자
- 10 가스요금 체납의 경우 월2%에 가산금을 년 2회까지 부과하며 계산은 일활적용 합니다.(미납원금은 부가세 별도금액)
*가산금 = 미납원금 × (2/100) × (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 11 당사는 매월 1회 가스계량기의 검침을 실시하며, 검침일은 당사가 정한 매 정례일 전후로 하되 수급사정 등에 따라 월2회 또는 격월로 검침할 수 있습니다.
- 12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에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가 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13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m³)로 하며, 검침 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 14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계량기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 15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그 밖의 사유로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계절을 감안한 추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 16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계량부와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부의 지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요금의 정산은 확인시점의 가스단가를 적용합니다. 단, 원격지시부 수리는 고객님께서 직접시행하셔야 하며 완료 시점까지 직접 자가 검침을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 17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수요자는 당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 18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도지사가 승인한 가스요금표를 적용합니다.
- 19 당사가 공급규정에 정해진 가스요금에 대해 원료비(도매요금) 변동외의 요인 또는 사유로 이를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행합니다. 다만, 인하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 합니다.
- 20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하여 적용하며, 경감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①경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사업에 참여자, 회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장애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다자녀("자" 또는 "손" 3인 이상/위탁가정포함)
 - ②경감수준 : 대상자구분별/계절별 차등 할인
 - ③적용시기 :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④신청방법 : 고객납부번호 확인 후 해당지역의 주민센터 신청 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사로 직접 신청
- 2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을 말합니다.
 - ①경감수준 :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합니다.
 - ②적용시기 : 신고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③신청방법 :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사로 직접 신청
- 22 공급중지 :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공급중지하며 당사는 5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① 요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③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 ④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때
 - ⑤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명할 때
 - ⑥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 받고도 가스 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 ⑦ 당사가 가스계량기 검침을 위해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할 때
 - ⑧ 가스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악화 등(퇴출, 부도, 파업, 화재, 파산 등)으로 인하여 안전 및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할 수 없다고 당사가 판단 할 때에는 통지와 함께 즉시 가스공급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 23 당사가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使用者가 그 사유가 된 사실을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고 공급의 재개를 원할 때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사용상 위해 요인 등 특별한 현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 24 당사는 법 및 안전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使用者 소유를 포함한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가스使用者가 당사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당사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5 당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 합니다.
- 26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가스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을 수행하며 이외에 사항은 일반상거래 및 쌍방 협의하여 결정합니다.